

## 사례

### 진단서 없는 병가사용 6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병가관련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A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하니

ㄱ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ㄴ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ㄱ과 ㄴ 중 누구의 말이 맞나요?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

2022-04-20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5921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박혜선(☎044-201-84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5-02

---

담당부서      복무과

관련법령

[인쇄](#)

[목록](#)